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모
- (지원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 지원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 (신청기간) '26년 1~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①취업 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등

세부사업	주요 내용
취업 교육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러닝) 폐업 직후 취업 기초역량, 취업 성공마인드 세팅, 취업 관문 통과 기술, 지원 정책 활용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li> </ul>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교육)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 효능감 강화를 위해 1:1 상담, 직무 적성 검사, 분업 토의 등 현장 참여형 취업 교육</li> </ul>
	심리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 폐업 상실감 극복 등을 위한 심리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li> </ul>
전직장려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시 1차(60만원) 및 취업 성공 후 60일 이상 근속 시 2차(4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li> </ul>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전·후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최대 120만원)</li> </ul>

### 2 세부 내용

#### < 2026년 특화취업지원 주요 변경사항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특화취업지원)		
<b>① 취업교육</b>		
구분	지원방식	비고
기초	e러닝, 10시간	-
심화	현장, 30시간	수강정원 최대 12명
<b>② 전직장려수당</b>		
구분	금액	지원요건
1차	60만원	· 구직활동 ·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2차	40만원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b>③ 심리회복지원</b>		
구분	비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당일형/숙박형	
☞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제공		
<b>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b>		
희리패 취업교육 (기초 이상) 수료	→	국취 참여 (I·II유형) →
소진공		연계수당 지급
		노동부
		소진공
☞ 월 20만원 연계수당 지원(최대 6개월)		
☞ 기초교육 이상 수료자 대상 연계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특화취업지원)		
<b>① 취업교육</b>		
구분	지원방식	비고
기초	e러닝, 10시간	-
심화	현장, 30시간	수강정원 최대 20명
☞ 심화교육 회차별 수강정원 증원		
<b>② 전직장려수당</b>		
구분	금액	지원요건
1차	60만원	· '25년 이후 심화교육 수료
2차	40만원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 (1차) 폐업 소상공인의 교육 참여 독려를 통한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해 수당 지급 요건 강화		
☞ (2차)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근속 기간 강화		
<b>③ 심리회복지원</b>		
구분	비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당일형/숙박형(조울증)	
(기타)치유 프로그램	유관기관 협의 후 확정	
☞ 심리회복 프로그램 내용 다양화 예정		
좌동		

- 지원방향 : 폐업자 맞춤형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 지원 실효성 제고
- 지원규모 : 총 37,440건 내외  
\*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sbiz24.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별첨1] '소상공인 기준' 참조
  - \*\*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함
- ▶ [별첨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 취업 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 \* 폐업 소상공인 나이가 만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① **취업교육**(기초+심화) 및 ② **심리회복 프로그램**, ③ **전직장려수당**(<sup>1차</sup>60만원 + <sup>2차</sup>40만원) 및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① **취업교육(기초+심화)**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 (지원규모) 10,400건 내외
- (지원절차) 기초→심화 단계별 교육 (교육별 연 1회 수강 제한)
- \* 단, '25년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심화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26년 취업 기초교육 수강을 생략하고 심화교육 신청·수강 가능함
- (지원내용)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구분	세부 사항	
기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li> <li>■ (방식) e-러닝 교육 / 10h 이상 * '26년부터 지식배움터 인정시간 기준</li> <li>*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로 처리함</li> <li>■ (내용)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 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 (<b>5개 이상 수강 및 학업성취도평가 후 수료 인정</b>)</li> </ul>	
	주제	과정별 세부 내용
	① 취업기초	• 변화관리/자아성찰/진로탐색/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
	② 취업 성공 마인드	• 재취업 성공 스토리/성공 면접 사례 분석
	③ 취업 관문통과 기술	• 목표설정 • 직종/업종/경력유형별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기술 •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
④ 자격증 및 지원정책	• 자격증/취업지원 정책 활용	

구분	세부 사항
심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li> <li>■ (방식) 대면교육 / 2~3주, 30h 이상</li> <li>■ (내용) 1:1면담,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li> <li>-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지급</li> </ul>

-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가. **폐업(예정) 소상공인 본인**

순번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온라인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3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폐업 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자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 상시근로자 有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상시근로자 수 확인

\* 교육 신청 시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마이데이터로 확인 불가능한 정보는 공단에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순번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온라인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3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직접 발급 후 제출	가족관계 확인
4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 동의서	업무편람 서식[11] 제출	-

②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동반자 1인 동행 가능
- (지원절차) 회차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소상공인 참여 신청 → 공단의 선정 통보 → 프로그램 개별 참여
- (지원내용)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치유 프로그램
  - \* 심리회복 효과 지속을 위해 1인당 연간(당해년도) 총 3회까지 참여 허용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총 3회까지 참여)

< (예시) 심리회복 프로그램 >



-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세부 계획에 따라 지원 세부 내용 변동 가능
- 실제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24' 내 심리회복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 화면 참고
- (참여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간·장소에 따라 참석자 개별 이동
- (운영일정) 회차별 모집 현황에 따라 실제 운영 일정 변동 가능
- \* 최소 참여 기준 인원 미달 시 폐강

< 신청 유의 사항 >

- **(선정 기준)** 참가자는 신청순으로 선정하되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부합하는 순으로 우선 선정 처리함
  - ① 심리회복 최초 지원 소상공인
  - ② 특정 프로그램(지역 등) 최초 지원 소상공인
  - ③ 위 ①, 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제외 기준)** 선정된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최종 불참한 경우, 공단은 해당자가 당해 연도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재신청할 시 선정 제외할 수 있음
  - ① (불참 1회) 무단 불참 지역 재신청 시 선정 제외
  - ② (불참 2회 이상) 당해 연도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 선정 제외

※ 사유: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타 지원자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③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 '26년 주요 변경사항 >		
* (지원요건) 취업 심화교육 필수 수료 / 취업·근속 인정 기준 강화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금액	• (1차) 60만원 (76.9만원 : 소득세 포함) • (2차) 40만원 (51.3만원 : 소득세 포함)	• (1차) 60만원 • (2차) 40만원
지원요건	• (1차) 심화교육, 취업완료 등 구직 •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 (1차) 심화교육 수료 • (2차)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하여 60일(2개월) 이상 근속

-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 배우자 미지원
- (지원규모) 9,040건 내외
- (지원내용) 1차 60만원,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수당 지급
- (지원요건)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지급 가능

구분	세부 요건
1차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사업체 폐업 신고 완료(폐업신고일 '23년 이후인 자)</li> <li>■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li> <li>■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li> </ul>
2차 (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지급 완료 후 2차 신청 가능</li> <li>■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li> <li>- 취업한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li> <li>■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li> </ul>

※ '26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5.12.31. 이전 취업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는 '25년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 적용 가능

- (지원제외) 미폐업자\*,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가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외
- (신청기한) 1차 수당은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가. 1차(60만원) 신청

순번	제출 서류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3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5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

나. 2차(40만원) 신청

순번	제출 서류	비고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3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5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
6	(취업 시)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제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 * 일용직, 특수고용직 불인정

- (유의사항) 사업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전직장려수당 신청·접수는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전직장려수당은 3년 주기 재지원을 허용함

\* 사업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년 내에 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1차부터 신청 가능함

\*\* 직전 3개년 내에 1차 수당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라면 나머지 2차 수당 신청 가능함(1차 신규 신청은 불가)

- 전직장려수당 차수별 지급 금액은 신청인 기지급 금액, 예산 현황,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따라 한도 내 조정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유형별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 여부

○ : 완료  
● : 신청 가능  
X : 신청 불가

유형	2025년				2026년				비고	
	교육		취업	전직 1차	교육		전직			
	기초	심화			기초	심화	취업	1차		2차
1	○	○	-	-	-	-	-	●	-	-
2	○	○	-	-	-	-	○	○	●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3	○	○	○	-	-	-	-	○	●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4	○	○	○	○	-	-	-	-	●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5	○	-	-	-	-	○	-	●	-	-
6	○	-	-	-	-	○	○	○	●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7	○	-	○	-	-	-	-	●	-	• '25년 신청 요건 인정
8	○	-	○	-	-	-	-	○	●	- (1차) 기초교육+취업 -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9	○	-	○	○	-	-	-	-	●	• '25년 신청 요건 인정 -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10	○	-	-	-	-	-	○	X	-	• 심화교육 미수로 인정 불가
11	○	-	-	-	-	○	○	●	-	• '26년 취업 전 심화교육 수료 시 인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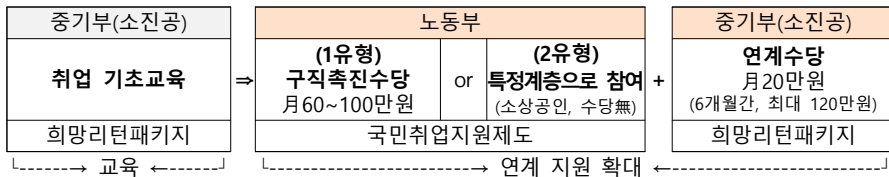
\* 유형 3, 4, 7, 8, 9 : 2025년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의 취업 후 근속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인정 가능

\*\* 유형 11 : 2025년 기초교육 수료 후 2026년 취업한 경우, 2025~2026년 심화교육 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으로 인정 불가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지원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25년 이후 수료) ※ 배우자 미지원  
\* 단, 매월 대상자 확정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지원규모) 18,000건 내외
- (지원절차) 취업교육(기초 이상) 수료→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참여하고 취업교육을 추가 수료하여도 지원 인정
- (지원내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

##### <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 >



※ 연계수당은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전직장려수당(1, 2차)과 별건

- (지원방법)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 참여 상태 확인일의 다음 달 말일에 차수별 수당 지급\*  
\* 기초교육 신청서의 계좌정보로 지급하며, 필수 서류 제출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종료', '유예'로 확인되는 등 연계 수당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 종료됨

#####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b>고용24</b>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상담의망	 <b>고용복지+센터</b> 	 <b>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b> 
온라인 신청 (work24.go.kr)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대행 (공단 지역센터/심화교육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0

### 3

### 기타 참고사항

#### □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교육	기초											
	심화											
전직장려수당												
국취 참여연계												
심리회복												

※ 교육기관 운영,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26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구분	신청기간	비고
취업 기초교육	'26. 1월 중 ~ '26. 11. 30.	-
취업 심화교육	'26. 2월 중 ~ '26. 11. 30.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상이함
전직장려수당	'26. 1월 중 ~ 예산 소진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6. 1월 ~ 예산 소진시	-
심리회복지원	'25. 2월 중 ~ '25. 11. 30.	-

□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참고 1 취업 기초교육(e러닝) 수강 방법

- (교육 신청) ①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기초교육 신청·선정\*된 이후
  - ② 공단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e러닝 교육 수강
- \* (기초교육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로그인 → 소진공 공고조회 → '26년 특화취업지원 기초교육 모집공고 → 회차별 교육 신청 → 선정
- ※ 신청인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교육 수강 전 소상공인24에서 신청·선정 과정 필요함
- (수강 방법) 공단 지식배움터에 게시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카테고리 교육 중 희망하는 5개 이상 과정(10시간) 신청 후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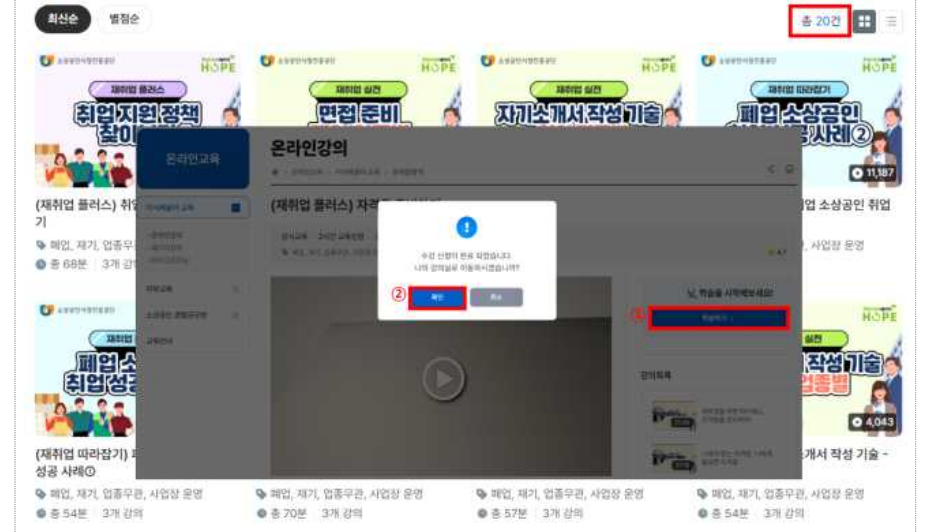
① 지식배움터 접속(로그인必) → [온라인교육] 클릭 → [온라인강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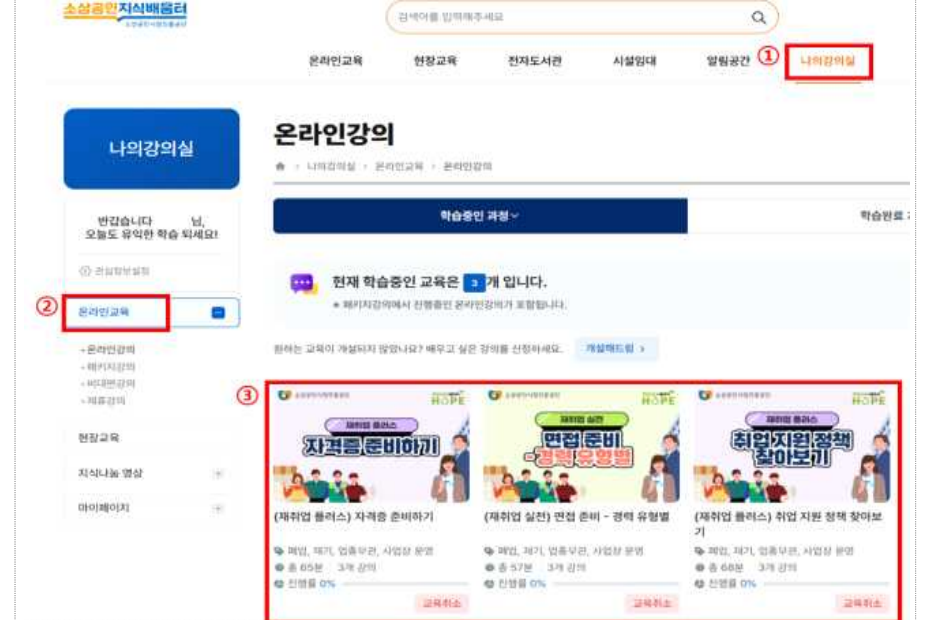
②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선택 → [검색] 클릭



③ 기초교육 e러닝 콘텐츠(20개) 중 수강 희망하는 교육 5개 이상 선택 후 “학습하기”



④ [나의강의실]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신청 과정별 학습



## 참고 2 전직장려수당 Q&A

- ① 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입니다. 제가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한 상황인데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 본인만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취업 교육만 추가 지원합니다.
- ② 제 명의의 다른 사업장은 폐업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 전직장려수당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이 폐업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지원 불가합니다.
- ③ '25년에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6년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
- ☞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을 따릅니다. '26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이 변경되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과거에 전직장려수당을 받았는데 '26년에 다시 신청되나요?
- ☞ 최근 3년간('23~'25년) 일괄 또는 2차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⑤ 폐업 후 취업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은 형태는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 계약기간, 취업처 등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별첨 1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25.9.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4.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45.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46.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47.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48.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49.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0.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1.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2.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3.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4.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5.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6.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7.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8.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59.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0.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1.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2.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3.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4.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5.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6.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7.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8.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69.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0.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1.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2.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3.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4.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5.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6.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7.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8.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79.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0.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1.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2.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3.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4.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5.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6.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7.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8.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89.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0.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1.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2.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3.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4.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5.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6.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7.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8.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99.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100. 기타 서비스업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류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209 중	임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신설)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진흥기법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용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용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희주점업(56211), 무도유희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외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 단,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 ③ 상기 ①,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